|  |  |  |
| --- | --- | --- |
|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재종[2011] 29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중점 개발 도시 재정청(국), 교통청 (국):  항구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수상운송 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 지시에 따라 재정부와 교통운수부가 회동하여 공동으로《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이하《방법》) 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인쇄 발포 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길 바라는 바이다.《항구 건설비 징수 방법》(국발[1985]124호)은《방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첨부문건: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교통운수부  2011년 4월 25일  첨부문건: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상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항구 건설비의 징수, 사용 및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및 국무원의 관련 지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항구 건설비의 징수, 상납(解缴),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한다.  **제3조** 항구 건설비는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입의 전액은 국고에 상납하고 재정예산에 포함하여 “수입 및 지출(收支两条线)” 관리를 시행한다.  **제4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상납(解缴)및 사용은 반드시 재정, 심계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징 수**  **제5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대상은 대외 개방항구를 거친 항구 관할 범위 내의 모든 부두, 부표, 정박지, 수역⬝하역 (barge 포함) 되는 화물이다.  **제6조** 항구 건설비의 의무 납세자(이하 ‘납세자’)는 화물의 송하인(또는 그 대리인) 또는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이다.  **제7조** 교통운수부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항구 소재지 해사관리 기구는 본 항구 관할구역 내의 항구 건설비의 징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해사관리기구는 건전한 징수 항구건설비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직접 납세자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해야 한다. 징수업무 요구에 따라, 해사관리기구는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권한 내의 화물) 등의 단위와 항구 건설비를 대리수령하는 위탁대리수령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단위의 대리수령 행위에 대한 일상 관리와 감독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위탁대리수령 단위의 명단을 교통운수부,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제8조** 항구 건설비의 구체적 징수 표준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수출화물은 중량톤(또는 톤으로 환산) 당 4위안: 국외 수출입 화물은 중량톤(또는 톤으로 환산) 당 5.6위안.  화물 중량톤과 톤으로 환산하는 계산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문의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국내 수출 컨테이너와 국내 노선의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당 32위안, 40피트 컨테이너 당 48위안: 국외 수출입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당 64위안, 40피트 컨테이너 당 96위안.  20피트와 40피트 외의 기타 비(非)표준 컨테이너는 유사한 컨테이너 형식에 따라 표준요금으로 징수한다.  **제9조** 시멘트, 식량, 화학비료, 농약, 소금, 사토(砂土), 석회분은 본 방법 제8조 (1) 규정의 징수 표준에 따라 반감하여 징수한다. 황사(黄沙), 인광석, 자갈 등 저가 화물은 항구 건설비 징수를 잠정적으로 유예한다.  **제10조** 남경(南京) 이상(남경 불포함) 장강 간선항구와 기타 내륙 하천항구는 본 방법 제8조, 제9조 규정의 징수 표준에 기초하여 반감 징수한다.  **제11조** 아래 화물은 항구 건설비를 징수 면제한다.  (1) 중국 군용물품, 대사관 물품, UN기구 물품  (2) 국제 통과화물, 국제 중계화물, 보세화물(수입 통관수속 진행이 완료된 건은 제외)  (3) 우편물(우체국 소포 불포함)과 여객 운송 수속 처리한 여행가방, 소포  (4) 해당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 자재, 화물정박 자재, 화물 포장 부품  (5) 어선 포획 수산물 및 방부용 얼음과 소금, 살아있는 가축/가금류의 이동 시 필요한 사료  (6) 빈 컨테이너(상품 컨테이너 제외)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제12조** 국내외 수출입 화물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1) 국외 수출하는 화물은 징수(대리수령) 단위가 선적항에서 각 선적지시서를 위탁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2) 국외 수입하는 화물은 징수(대리수령) 단위가 선적항에서 각 선적지시서를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3) 국외 수입이 선적항에 선적하지 않고, 단위를 변경한 후 원래 선박 또는 국내 기타 항구에 운반된 화물의 경우, 징수(대리수령)단위가 단위를 변경한 항구에서 국외 수출입 화물의 징수 표준에 따라 국내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에게 1회 항구 건설비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4) 국외 수입화물을 항구의 창고저장 장소에서 바로 재선적하여 국내 수출화물(선간 운반화물 포함)로 전환하는 경우, 국외 수입화물의 항구건설비는 1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5) 국내 수출화물에 대하여, 징수(대리수령)단위는 선적항에서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항구건설비를 1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6) 국내 수로 집중운송에서 국외로 수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하여, 징수(대리수령)단위는 국내 수출의 첫 번째 선적항에서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국내 수출화물의 항구건설비를 일회 계산하여 징수한다. 국외로 수출할 시, 징수(대리수령)단위는 국외 수출의 중계항에서 국외 수출입 및 국내 수출 화물 비용기준에 따라 항구건설비의 차액을 보충 징수한다. 만일, 첫 번째 선적항이 대외개방 항구가 아닐 경우, 국외로 수출하는 중계항에서 국외수출입 비용기준에 따라 직접 징수한다.  (7) 국내외 수출화물의 비용 납부자는 선적수속을 진행할 시 항구건설비를 납부하며 국외 수입화물의 비용 납부자는 화물인수수속을 진행할 시 항구건설비를 납부한다.  **제13조** 해사관리기구는 화물 선적 또는 항구에서 출항할 때, 반드시 항구 건설비 납부 완료한 증빙자료를 검사 및 확인해야 한다.  항구 건설비를 미납부한 국내외 수출입화물은 선적 또는 출항할 수 없다.  **제14조** 징수한 항구 건설비는 반드시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정부성 기금 전용어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5조** 대리수령단위는 항구 건설비를 수취한 당일에 수취금액의 전액을 소재지 해사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친 관련 은행 계좌에 납입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당일 수취한 항구 건설비를 전액 국고에 납입하고, 국고에 납입할 때에는 “일반 납부서”를 작성한다.  **제16조** 항구 건설비의 80%는 중앙 국고에 상납하고, 20%는 소재 도시의 상응하는 국고에 납입한다. 국고에 납입할 때에는《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103종 “비세수인”,01관 “정부성 기금 수입”, 15항 “항구 건설비 수입”에 기입하고, 중앙, 지방의 분배비율을 주를 달아 기록한다.  **제17조** 해사관리기구, 재정부분은 국고와 항구 건설비 수입의 정산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또는 재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지방, 부문 또는 단위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 대상, 범위, 표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항구 건설비를 감수징수, 면제, 징수 연장, 징수 정지 할 수 없다.  **제3장 사 용**  **제18조** 항구 건설비의 사용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특별비용을 전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에 배분된 항구 건설비의 주요 사용처:  (1) 연해 항구의 공공 인프라 건설 지출: 연해 항구 항로, 방파제, 정박지 등 인프라 건설을 포함, 육도(陆岛)교통 부두의 건설  (2) 내륙 하천 수운 건설 지출: 내륙하천 항로, 선박의 항행(航行)용 수문(水門), 승선기, 항전 중추, 중서부 내륙 하천 항구 건설 등 포함  (3) 지원 보장 시스템 건설 지출: 연해와 내륙하천 수역의 해사, 구조인양, 안전 및 응급통신, 항로 등 포함  (4) 전문성 지출: 교통건설발전 사전 업무 경비, 엔화 대출금 상환 지출 등 포함  (5) 징수관리 경비  (6) 선박 대리회사 또는 화물 운송인의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수속비 지불  (7)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지출  지방에 배분된 항구 건설비는 관할구역 내 항구 공공 인프라 및 항운 지원 보장 시스템의 건설 및 유지에 주요 사용된다.  **제19조** 해사관리기구가 선박 대리 회사 또는 화물 운송인 등에 위탁하여 항구 건설비를 대리수령할 경우, 대리수령하는 항구 건설비 1%에 해당하는 대리수령 수속비를 지불해야 한다. 대리수령 수속비는 교통운수부 예산에 포함하고, 중앙재정이 기금 예산을 통해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해사관리기구와 위탁한 대리수령 단위는 대리수령 수입 중의 대리수령 수속비를 직접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교통운수부는 규정에 따라 연도 중앙 항구 건설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및 결산 납부는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건설비 보조 지방 항목 지출의 자금 관리 방법은 재정부와 교통운수부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유관 도시의 인민정부 교통운수(항구) 관리부분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연도 지방 항구 건설비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고, 동급 교통운수(항구) 관리부문에 납입한 예산 및 결산을 동급 재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항구 건설비의 자금 지불은 재정 국고 관리 제도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규정에 따라《정부 수입지출 분류과목》의 관련 과목을 작성한다.  **제23조**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이 수취한 항구 건설비 대리수령 수속비는 반드시 “영업외 수입-기타 수입” 과목에 통일적으로 정산하여 작성한다.  **제24조**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의 통계 보고서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매월 상급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말 5업무일 내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점 개발 도시 소재지 재정부에 주재한 소재지 재정부의 감독 전문인원 사무소와 동급 재정부분에 보고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조사 및 법률 책임**  **제25조** 재정부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 사용 상황 감독조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정부, 교통운수부, 지방 재정부문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항구 건설비의 징수, 납부 감독 및 사용 상황에 대한 일상 감독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국가금고조례》와 그《실시세칙》등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의 항구 건설비의 수납, 국고납부 등의 업무상황에 대한 일상 감독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거절, 방해 또는 차단해서는 안 된다. 유관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수락해야 하며, 감독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엄격하게 중앙 예산단위 은행 계좌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좌와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항구 건설비를 불법 재무 처리하거나, 유보,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지방재정부문, 해사관리기구는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인에 대해《재정 위법행위 처벌 조례》(국무원령 제427호)및 유관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항구 건설비를 전액 대리수령하지 않거나, 즉시 납부를 하지 않은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의 경우, 재정부와 지방재정부문, 해사관리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선박대리회사, 화물 운송인에게 항구 건설비를 추징하고, 기일에 따라 미 징수한 금액의 1만 분의 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동시에 항구 건설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국고에 상납한다.  **제28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해사관리기구에 항구 건설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항구 건설비의 수입을 상응하는 국고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 교통운수부는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반드시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감제한 정부성 기금 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유관단위가 유보, 점용, 횡령 등 불법적으로 항구 건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정부, 지방재정부문은 국무원령 제427호 및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0년 12월 31일 중지한다. 본 방법 시행 후, 기타 항구 건설비의 관련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32조** 본 방법은 재정부, 교통운수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ㅇㄹ국국국구구국[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http://cafe.naver.com/kotradalian/823) |작성자 [쥬니어켄](http://cafe.naver.com/kotradalian.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parfum12) |  | **关于印发《港口建设费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  财综[2011]2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交通厅（局）：  　　为加快港口基础设施建设，促进我国水运事业发展，根据国务院有关批示精神，财政部会同交通运输部共同制定了《港口建设费征收使用管理办法》（以下简称《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港口建设费征收办法》（国发[1985]124号）自《办法》施行之日起废止。  　　附件：港口建设费征收使用管理办法  财政部  交通运输部  　　二○一一年四月二十五日  附件：  **港口建设费征收使用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水运事业健康发展，规范港口建设费的征收、使用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及国务院有关批示精神，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港口建设费的征收、解缴、使用、管理和监督。  **第三条** 港口建设费属于政府性基金，收入全额上缴国库，纳入财政预算，实行“收支两条线”管理。  **第四条** 港口建设费的征收、解缴、使用等，应当接受财政、审计部门的监督检查。  **第二章 征 收**  **第五条** 港口建设费的征收对象为经对外开放口岸港口辖区范围内所有码头、浮筒、锚地、水域装卸（含过驳）  的货物。  **第六条** 港口建设费的义务缴纳人（以下简称缴费人）是货物的托运人（或其代理人）或收货人（或其代理人）。  **第七条** 交通运输部负责港口建设费的征收管理工作。港口所在地海事管理机构具体负责本港口辖区内港口建设费的征收工作。  　　海事管理机构应建立健全征收港口建设费工作机制，直接向缴费人征收港口建设费。根据征收工作需要，海事管理机构可以与船舶代理公司、货物承运人（仅限内贸货物）等单位签订委托代收协议代收港口建设费。海事管理机构负责对港口建设费代收单位的代收行为进行日常管理和监督。  　　海事管理机构应将拟委托代收港口建设费单位的名单报交通运输部、财政部核准。  **第八条** 港口建设费的具体征收标准如下：  　　（一）国内出口货物每重量吨（或换算吨）4元；国外进出口货物每重量吨（或换算吨）5.6元。  　　货物重量吨和换算吨的计算方法，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现行有关规定执行。  　　（二）国内出口集装箱和内支线集装箱20英尺每箱32元，40英尺每箱48元；国外进出口集装箱20英尺每箱64元，40英尺每箱96元。  　　20英尺和40英尺以外的其他非标准集装箱按照相近箱型的收费标准征收。  **第九条** 水泥、粮食、化肥、农药、盐、砂土、石灰粉按照本办法第八条（一）规定的征收标准减半征收。黄沙、磷矿石、碎石等低值货物暂缓征收港口建设费。  **第十条** 南京以上（不含南京）长江干线港口和其他内河港口在本办法第八条、第九条规定征收标准的基础上减半征收。  **第十一条** 下列货物免征港口建设费：  　　（一）我国军用物品，使馆物品，联合国机构的物品；  　　（二）国际过境货物、国际中转货物、保税货物（办理完进口清关手续的除外）；  　　（三）邮件（不包括邮政包裹）和按客运手续办理的行李、包裹；  　　（四）船舶自用的燃、物料，装货垫缚材料，随货物同行的包装备品；  　　（五）渔船捕获的鱼鲜以及同行的防腐用冰和盐，随活畜、活禽同行的必要饲料；  　　（六）空集装箱(商品箱除外)；  　　（七）国务院规定的其他货物。  **第十二条** 国内外进出口货物，按照以下规定计征港口建设费：  　　（一）出口国外的货物，由征收(代收)单位在装船港按每张装货单向托运人（或其代理人）计征一次港口建设费。  （二）国外进口的货物，由征收(代收)单位在卸船港按每张提单向收货人（或其代理人）计征一次港口建设费。  （三）国外进口到港未卸，换单后原船又运往国内其他港口的货物，征收(代收)单位在换单港口按照国外进出口货物的征收标准向国内收货人（或其代理人）计征一次港口建设费。  （四）国外进口未提离港口库场，又装船转为国内出口的货物（包括船过船作业的货物），只计征一次国外进口货物的港口建设费。  　（五）国内出口货物，由征收(代收)单位在装船港向托运人（或其代理人）征收一次港口建设费；装船港不是对外开放口岸港口，卸船港是对外开放口岸港口的，由卸船港向收货人（或其代理人）征收一次港口建设费。  （六）国内水路集运转出口国外的货物，由征收(代收)单位在国内出口的第一装船港向托运人（或其代理人）计征一次国内出口货物港口建设费。出口国外时，再由征收(代收)单位在出口国外的转运港按国外进出口和国内出口货物收费标准的差额补征港口建设费。如果第一装船港不是对外开放口岸港口，由出口国外的转运港按国外进出口收费标准直接计征。  （七）国内外出口货物缴费人在办理装船手续时缴纳港口建设费，国外进口货物缴费人在办理提货手续时缴纳港口建设费。  **第十三条** 海事管理机构在货物装船或货物提离港口时，应查验港口建设费缴讫凭证。  未缴清港口建设费的国内外进出口货物，不得装船或提离港口。  **第十四条** 征收港口建设费应使用财政部统一监制的政府性基金专用票据。  **第十五条** 代收单位应当在收到港口建设费的当日，将所收资金全额缴入所在地海事管理机构经批准的相关银行账户，海事管理机构应于当日将收到的港口建设费全额就地缴入国库，缴库时开具“一般缴款书”。  **第十六条** 港口建设费80%部分上缴中央国库，20%部分缴入所在城市对应级次国库。缴库时，填列《政府收支分类科目》103类“非税收入”，01款“政府性基金收入”，15项“港口建设费收入”，并注明中央、地方分成比例。  **第十七条**　海事管理机构、财政部门应加强与国库之间港口建设费收入的对账工作。未经国务院或财政部批准，任何地方、部门和单位不得改变港口建设费的征收对象、范围和标准，不得减征、免征、缓征、停征港口建设费。  **第三章 使 用**  **第十八条** 港口建设费使用遵循以收定支、专款专用的原则。  　　中央分成的港口建设费主要用于：  　　（一）沿海港口公共基础设施建设支出，包括沿海港口航道、防波堤、锚地等基础设施建设，陆岛交通码头建设。  　　（二）内河水运建设支出，包括内河航道、船闸、升船机、航电枢纽、中西部内河港口建设等。  　　（三）支持保障系统建设支出，包括沿海和内河水域的海事、救助打捞、安全及应急通信、航道等。  　　（四）专项性支出，包括交通建设发展前期工作经费、日元还贷支出等。  　　（五）征管经费。  　　（六）支付船舶代理公司或货物承运人的港口建设费代征手续费。  　　（七）国务院批准的其他支出。  　　地方分成的港口建设费主要用于辖区内港口公共基础设施以及航运支持保障系统的建设和维护。  **第十九条** 海事管理机构委托船舶代理公司或货物承运人等单位代收港口建设费，可按其代收港口建设费的1%支付代征手续费。代征手续费列入交通运输部预算，由中央财政通过基金预算统筹安排。海事管理机构及其委托的代收单位不得在代收收入中直接提留代征手续费。  **第二十条** 交通运输部应当按照规定编制年度中央港口建设费收支预决算，纳入其预决算并报财政部审批。港口建设费补助地方项目支出的资金管理办法由财政部会同交通运输部另行制定。  **第二十一条** 有关城市人民政府交通运输（港口）管理部门应当按照规定编制年度地方港口建设费收支预决算，纳入同级交通运输（港口）管理部门预决算并报同级财政部门审批。  **第二十二条** 港口建设费的资金支付按照财政国库管理制度有关规定执行，并按规定填列《政府收支分类科目》相关科目。  **第二十三条** 船舶代理公司、货物承运人收到的港口建设费代征手续费，应当列入“营业外收入-其他收入”科目统一核算。  **第二十四条** 海事管理机构应当建立港口建设费统计报表制度，按月向上级海事管理机构报送，并于每月结束后的5个工作日内，抄送所在地财政部驻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财政监察专员办事处和同级财政部门。  **第四章 监督检查与法律责任**  **第二十五条** 财政部负责对港口建设费的征收使用情况进行监督检查。  　　财政部、交通运输部、地方财政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对港口建设费的征收、监缴以及使用情况实施日常监督检查，中国人民银行分支机构按照《国家金库条例》及其《实施细则》等规定，对商业银行办理港口建设费的收纳、解缴入库等业务情况实施日常监督检查。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拒绝、妨碍或者阻挠。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接受依法实施的监督检查，并为其提供方便。  　　海事管理机构应严格按照中央预算单位银行账户管理等相关规定，加强账户和资金管理，不得坐收坐支、截留、挪用港口建设费。  **第二十六条** 对于违反本办法，缴费人不缴或者少缴港口建设费的，地方财政部门、海事管理机构应对相关责任单位和责任人按照《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国务院令第427号）及有关法律法规予以处理。  **第二十七条** 对于违反本办法，船舶代理公司、货物承运人没有足额代收、及时解缴港口建设费的，财政部和地方财政部门、海事管理机构应责令其限期改正；情节严重的，应采取有效措施责令船舶代理公司、货物承运人予以追缴，并按日加收应缴未缴金额万分之五的滞纳金，随同港口建设费按规定的比例分别上缴中央和地方国库。  **第二十八条**　对于违反本办法，海事管理机构不征、少征港口建设费，或未按规定将港口建设费收入及时足额缴入相应级次国库的，财政部、交通运输部应责令其限期改正，情节严重的，应对相关责任单位和责任人按照国务院令第427号及有关法规予以处理。  **第二十九条** 对于违反本办法，不使用财政部统一监制的政府性基金票据，由财政部责令其限期改正，并对相关责任单位和责任人按照国务院令第427号及有关法规予以处理。  **第三十条**　对于违反本办法，有关单位截留、挤占、挪用等未按规定使用港口建设费的行为，财政部、地方财政部门按照国务院令第427号及有关法规对相关责任单位和责任人予以处理。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一条** 本办法自2011年10月1日起施行，到2020年12月31日止。本办法施行后，其他港口建设费的相关规定同时废止。  **第三十二条** 本办法由财政部、交通运输部负责解释。 |